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3년 3월 7일

나. 회부일자 : 2023년 3월 9일

3. 제안이유

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사항  
(종전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확대)을 반영하고,

나. 충청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제명 변경(안 제명)

나.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지원계획 체계화(안 제4조)

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9조 ~ 안 제13조)

라.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 등 마련  
(안 제14조 ~ 안 제17조)

## 5. 검토의견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

### 가. 제출배경

- 현행 조례는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소재·부품 및 그 생산설비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2019년 9월 23일 제정되었으나,
- 근거법인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9년 12월 31일, ‘장비산업’이 추가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재부품장비산업법”)으로 ‘전부개정’ 되었으나, 현행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지난 2022년 11월 14일 신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시 김국기 의원으로부터 개정요구를 받았음
- 이에 충청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 등과 육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서 6개 조항이 증가된 본칙 18개 조항과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안 제5조**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현행 조례는 소재·부품 산업 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는 5년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5조 및 제6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는데, 이 개정안은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현행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 위원수, 위촉직 위원 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 이러한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화하였음
- 다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은 과학인재국장으로, 부위원장을 담당 과장으로 규정하고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려는 것은 관 주도로 위원회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나,
-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특성상 민간의 기술력과 경험 등 민간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민간주도가 아닌 관 주도의 위원회 운영은 확일화되고, 경직된 운영 등이 우려됨에 따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관련 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안 제7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으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과 비교할 때, 안 제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제척 등의 사유를 제1호에서는 강화한 반면, 제3호에서는 완화하였음

- 제3호에서 위원이 해당 안전에 관한 증언, 감정 외에 진술, 자문, 연구, 용역을 삭제하여 제척·기피·회피 조건을 완화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다. 종합의견

-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필수적인 ‘보이지 않는 기술 속의 기술’로, 산업 안보와 국가 경제 미래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으며, 미래신시장 주도를 위한 기술혁신과 글로벌 공급망 핵심 주체로서 이를 더욱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것임
- 이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위원회 설치 등을 구체화함은 물론 각종 육성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례의 전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다만, 현행 조례에서 3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육성계획으로 개정할 점, 위원회 구성을 ‘격하’한 점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완화 등 앞서 지적한 사항들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관련 부서의 보편·타당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